

집단응집성이 분배원칙 선호에 미치는 영향*

장 성 수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에서는 형평이론과 다원칙론의 대립의 맥락에서 형평원칙과 균등원칙의 선호조건을 집단응집 수준으로 하고, 불공정 분배로서 불형평만이 아니라 불균등도 있음을 제안했다. 이에 분배원칙 선호 가설(가설 1)로서, 집단응집이 강할때는 균등원칙이 선호되고 집단응집이 약할 때에는 형평원칙이 선호될 것임을 설정하였다. 또한 불공정 해소 가설(가설 2)로서, 집단응집이 강할 때에는 불형평 보다는 불균등을 해소하려 하고, 집단응집이 약할 때에는 불균등 보다는 불형평을 해소할 것임을 설정하였다.

가설 1은 “자신-타인” 분배 패러다임으로, 집단응집 수준(2)× 투입크기(2)의 요인 설계에서 보상 분배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검증하였다(실험 I). 가설 2는 불공정 실험 패러다임에 따라, 집단응집 수준(2)× 분배방식(2)의 요인설계에서 보상분배 전, 후에 작업수행을 반복측정하여, 분배방식(형평 V, S 균등분배)에 따른 불형평과 불균등이 작업수행에 미치는 효과로써 검증하였다(실험 II). 실험 결과, 두 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에서, 개인들의 분배행동을 규율하고 주어진 성과분배에 대한 정의판단의 기준이 되는 분배원칙(distributive principle)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핵심적인 연구 주제로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분배원칙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크게 두가지 입장으로 대립된다.

그 하나는 Homans(1961)에 기초하여 Adams(1965)에 이어 Walster, Berscheid와 Walster(1973)가 제안한 형평이론의 입장이다. 이 이론의 골자는 개인이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이를 통제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는 개인들의 투입(input)에 비례하여 성과(outcome)를 분배하

* 이 연구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수행된 두개의 실험만을 발췌한 것으로 이 실험들은 1986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의 지원을 받은 것이다.

는 형평분배 체제를 마련하고 처벌과 보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규범을 내면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투입과 성과의 비율이 비교대상이 되는 타인의 그것과 다를 때에는 불쾌한 긴장이 야기되어 형평상태로 환원되도록 동기화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형평이론에서는 형평원칙만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분배정의 원칙으로 간주한다.

한편 형평이론의 형평원칙 유일론에 반대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자에 따라 분배원칙의 종류와 그것이 적용되는 조건에 대하여 다소 다르게 주장하지만, 공통적으로 형평원칙 이외에도 다양한 분배원칙이 있고 그것이 적용되는 조건이 다르다는 다원칙론적 입장을 취한다(예: Deutsch, 1975; Lerner, 1977; Leventhal, 1976 b; Sawpson, 1975). 예를 들면, 형평원칙 이외에도 개인의 투입크기와는 관계없이 성과를 동일하게 분배하는 균등원칙(equality principle), 개인에게 성과가 필요되는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필요원칙(need principle) 등이 있으며, 집단의 생산의 극대화가 중시될 때에는 형평원칙이 선호되지만 인간관계가 중시될 때에는 균등원칙이 선호되고, 친밀관계에서 상대방의 안녕에 대한 책임이 중시될 때에는 필요원칙이 선호된다고 주장한다(Leventhal, 1976 a).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형평이론은 이들 각 조건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적절한 투입요인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균등원칙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즉 개인차가 없는 인간성(humanity)이라는 요인을 적절한 투입요인으로 지각할 때 나타나는 분배형태이며, 필요원칙은 개인의 필요정도가 적절한 투입요인으로 지각될 때 나타나는 분배형태로서, 결국 투입요인에 비례하여 성과를 분배하는 형평분배의 특수한 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Walster, Walster, & Berscheid, 1978, p. 214 참조).

상기한 바와 같이 ‘인간성’, ‘필요’ 등을 투입요인으로 보고 균등분배등이 형평원칙의 특수한 경우가 되는지의 문제는 이론적 관점 또는 접근의 문제이므로 실증적 수준에서 검토될 것이 아닐것이다. 그러나, 장성수(1985)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이 형평분배 일지라도 개인간의 성과의 크기가 다른(따라서 투입의 크기도 다른) 형평분배 보다는 성과의 크기가 동일한(따라서 투입의 크기도 동일한) 형평분배에 대하여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형평의 정도가 동일하더라도 균등분배에 의한 불형평(개인간의 투입의 크기는 다른데 성과의 크기는 동일할 경우)보다 불균등분배에 의한 불형평(개인간의 투입의 크기는 같은데 성과의 크기가 다를 경우)에 대한 불만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불형평에 의해서 만이 아니라 형평이 유지되는 조건일지라도 성과가 불균등할 경우에는 불만이 야기된다는 것으로서, 형평원칙과 독립적으로 균등분배 원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불형평 일지라도 균등원칙

에 위배된 불형평이 더욱 불만이 크다는 것 역시 균등원칙이 형평원칙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이 결과는 형평원칙 유일론을 주장하는 형평이론의 제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기한 결과(장성수, 1985)에 입각하여 심리적인 분배원칙으로서 형평원칙 만이 아니라 균등원칙도 존재하며, 따라서 불형평 뿐만이 아니라 불균등도 불만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면, 형평원칙이 선호되는 조건에서는 불형평이 주된 불만요인이 되지만 균등원칙이 선호되는 조건에서는 불형평 보다는 불균등이 주된 불만요인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다원칙론의 입장에서 쉽게 예언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선호되는 분배원칙이 다르다는 주장 속에서 선호되지 않는 분배원칙이 적용되었을 때는 불만이 야기될 것임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배정의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형평이론을 지지하는 연구자들과 다원칙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주 관심이 다르고, 이에 따라 실험과라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상기한 바와 같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는 불형평 보다 불균등이 불만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즉, 형평이론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의 주 관심은 이 이론의 검증에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입과 성과의 조작을 통하여 불형평을 조작하고, 조작한 불형평에 대한 개인들의 반응(reaction), 즉 불형평에 대한 개인들의 심리적 경험이나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한 투입과 성과의 조절 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실험과라다임을 사용하여 왔다. 반면에, 다원칙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그들의 주 관심이 다양한 분배원칙 중에서 특정 분배원칙이 선호되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형평이론에 의해 주도된 실험과라다임과는 달리 특정 분배원칙이 선호 되리라고 간주되는 상황과 투입을 조작하여, 개인들의 자발적인 분배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실험과라다임을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형평이론의 입장에서 불형평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들에서는 다원칙론에서 주장되는 분배원칙 선호조건이 간과되어, 불형평의 효과가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형평 보다 불균등이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있다. 한편, 다원칙론의 입장에서 설계된 연구에서는 주관심을 분배원칙 선호에 두고 선호되지 않은 분배원칙을 적용시켰을 때의 불만 야기와 이에 따른 효과에 직접적인 관심을 두지 않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검토할 수 없는 실험과라다임을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들에서도 주어진 조건에 따라 불형평과 불균등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형평분배와 균등분배의 효과를 불균등과 불형평의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형평원칙과 균등원칙이 모두 함께 부합되는 조건을 제외

하면, 주어진 형평분배와 균등분배 각각은 이중의 의미를 갖게된다. 즉, 개인 간의 투입의 크기가 동일할 경우를 제외하면, 형평분배는 형평원칙을 기준으로 하면 형평이 되지만, 균등원칙을 기준으로 하면 불균등이 된다. 또한, 균등분배는 균등원칙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균등이지만, 형평원칙을 기준으로 하면 불형평이 된다. 그리고 분배의 정의원칙으로서 형평원칙 뿐만 아니라 이와는 독립적인 균등원칙도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지각자가 정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분배원칙에 따라, 균등분배는 형평원칙에 이탈된 불형평으로서 불공정하게 지각될 수도 있을 것이며, 형평분배는 균등원칙을 위반한 불균등으로서 불공정하게 지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한 맥락에서 다원칙론의 입장을 받아들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선호되는 분배원칙이 다를 것을 가정하면, 형평원칙이 선호되는 조건에서는 주어진 분배가 불균등할 때 보다 불형평할 때 불공정한 것으로 지각될 것이며, 균등원칙이 선호되는 조건에서는 주어진 분배가 불형평할 때 보다는 불균등할 때 불공정한 것으로 지각될 것임을 가설화할 수 있다. 이를 연구의 개념적 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두개의 연구문제가 제기된다.

첫번째 문제는 주어진 분배에서의 불형평과 불균등 각각이 불공정한 것으로 지각되게 하는 조건, 즉 형평원칙과 균등원칙의 선호조건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첫번째 문제에 후속하여, 분배원칙의 선호조건에 따라 불공정으로 지각된 불형평과 불균등이 개인에게 어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는 분배정의의 심리학적 접근에서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두개의 물음, 즉 “사람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분배되었을 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과 “사람들이 주어진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지각하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라는 물음에 관한 문제가 된다.

집단웅집성과 분배원칙의 선호

본 연구에서 제기한 첫번째 문제는 형평원칙과 균등원칙의 선호조건 이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형평원칙과 균등원칙은 자신에게 부여된 분배에 대한 정의판단 기준으로서의 분배원칙이다. 따라서 분배원칙 선호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배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실험과라다임에서, 분배자가 자신의 몫도 분배하는 “자신-타인” 분배과라다임에서 밝혀진 분배원칙 선호조건이 본 연구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결과는 피험자들이 상대방에게 호의적으로, 즉 자신의 투입이 클 때는 균등분배를 하고 투입이 적을 때에는 형평분배를 하는 것이었다(예 : Lach, 1975; Leventhal & Lane, 1970; Leventhal & Michaels, 1969; Mikula &

Uray, 1973). 이러한 현상을 Mikula와 Schwinger(1978)는 “관용 의식(politeness ritual)”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특히 Shapiro(1975)는 이러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차후상호작용 등과 같이 개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중시되는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즉 인상관리를 위해 타인에게 유리한 분배를 하게 됨을 밝혔다.

그러나 상기한 인상관리 때문에 선호되는 분배원칙은 내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배원칙과 다를 수 있으며, 그러할 경우에는 피분배자의 정의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투입이 큰 사람들이 차후 상호작용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균등분배를 한다고 해서 차후 상호작용 조건을 본 연구에서의 균등원칙 선호조건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원칙론에서 주장되는 형평원칙과 균등원칙의 선호조건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Sampson(1975)은 형평원칙은 상호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 인간관계에서 적용되는 분배원칙이며, 균등원칙은 개인의 조화로운 관계와 신분의 일치가 중시될 때 적용되는 분배원칙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Deutsch(1975)는 형평원칙은 경제적 생산이 중시되는 조건에서, 그리고 균등원칙은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중시될 때에 적용되는 분배원칙임을 주장하였다. Lerner(1975)는 결함(unit)관계, 즉 자신과 타인이 함께 소속된 관계에서 상대방 개인이 지각대상이 될 때에 균등원칙이 선호되며, 개인이 처한 상황이 지각대상이 될 때는 형평원칙이 선호된다고 제안하였다. 그 밖에 Leventhal(1976 b)은 과제중심적이고 협동이 요구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형평원칙이 선호되고, 구성원들 간의 사회정서적 관계가 중시되어 갈등을 극소화하려 할 때 균등원칙이 선호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자들이 균등원칙과 형평원칙의 선호조건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지만 대체로 집단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들 중 특히 Sampson(1975)과 Leventhal(1976 a, b)의 주장은 “집단응집성(group cohesiveness)”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해 볼 수 있다.

“집단응집성”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대체로 Shaw(1981)가 정리한 바 대로 다음의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p. 213 참조). 첫째는 “구성원들이 집단에 머무르게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산”(Festinger, 1950, p. 274)이란 정의로 대표할 수 있는 바, 집단에 대한 매력(attraction)이란 의미로 사용된다. 둘째로 집단구성원들의 사기(morale) 또는 동기수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구성원들 간의 협동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집단응집성의 의미를 상기한 첫 번째 의미와 세 번째 의미로 사용한다면, 집단응집성이 강하다는 것은 집단구성원들의 소속감이 강하고 상호협동이 강하다는 의미가 되므로 이에 따라 조화로운 인간관계

가 중시된다고 볼 때, 앞서 언급한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균등원칙 선호조건은 환원하면 집단응집성이 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집단응집성이 약하다면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협동감이 낮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상호독립적일 것으로 생각할 때, 앞서 언급한 다원칙론의 일부 연구자들이 주장하였던 형평원칙 선호조건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형평원칙 선호조건으로 주장된 개인주의적 인간관계 (Sampson, 1975)와 과제중심적이고 협동이 요구되지 않는 조건 (Leventhal, 1976 b)과 일치된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응집성의 강도를 형평원칙과 균등원칙의 신호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안하려 한다. 이는 형평원칙과 균등원칙이라는 분배정의 원칙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집단”이란 개념과 관련하여 고찰되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두 원칙의 고유성이 부연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첫째, 형평원칙과 균등원칙은 모든 대인관계에서가 아니라 집단에 함께 소속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시되는 분배원칙임을 가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형평원칙이든 균등원칙이든 분배정의원칙의 본래의 기능이 개인의 이기적 관심에 따른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방지하여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있다고 볼 때, 자신의 집단과는 관계없는 집단구성원이나 적대적 집단 간에서의 분배에까지 형평과 균등이라는 분배정의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상기한 바와 같이 집단의 맥락에서 “집단응집성”의 개념을 고려하면, 비록 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연구된 것은 아니지만, Tajfel(1978, 1979)에서 Turner(1982)로 이어져 체계화된 집단간 행동에 대한 이론으로 집단내에서 형평과 균등원칙의 선호가 잘 설명될 수 있으며, 집단과 관련된 측면에서 형평분배와 균등분배의 특성이 잘 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Tajfel(1978, 1979)은 개인의 행동이 개인간과 집단간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제반 사회적 행동을 개인간 행동과 집단간 행동이라는 연속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때 개인간 행동은 자신을 독특한 독립적 개인으로 동일시할 때 나타나며, 집단간 행동은 자신을 집단에 동일시할 때 나타나는 행동을 말한다. Turner(1982)는 상기한 Tajfel의 개인-집단 차원에서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인지적 가설을 제안하였다. 그는 개인의 자기개념을 제반 조건에서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인지구조로 개념화하고, 이러한 자기개념이 “개인정체(personal identity)”와 “사회정체(social identity)”라는 두 개의 하위체제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였다. “개인정체”는 개인이 자신을 개인 특유의 속성, 즉 성격, 지능 등과 같은 개인차 요인들로 지각하는 것이며, “사회정체”는 자신을 인종, 국적 등과 같은 사회적 범주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개념은 상황에 따라 개인적 정체와 사회적 정체 간에 전환되며 개인의 자기개념의 하위체제에서 “사회정체”, 즉

집단정체가 우세할 경우 개인은 내집단(in-group)구성원들 간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반면에 외집단(out-group)구성원들과의 차이를 크게 지각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들은 자신을 포함한 내집단 구성원들 간의 개인차를 무시하고, 집단의 공통된 속성을 지닌 존재로 지각하게 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Turner(1982)의 “개인정체”와 “사회정체”에 대한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집단응집성에 따른 분배원칙 선호에 대한 가설을 다음의 논의를 통하여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집단응집성”의 개념적 정의를 Festinger(1950)에 따라 구성원들이 집단에 머무르게 하는 힘의 총합으로 할 때, 집단응집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경험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feeling of belongingness)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한편, 개인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면 자신을 독특한 개인으로서 자각하기 보다는 소속집단의 구성원으로 자각할 것은 쉽게 가정된다. 또한,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상호독립적이거나, 집단의 목적보다는 개인의 목적에 대한 관심이 크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게 될 것임을 가정할 때, 집단결속이 약한 조건에서는 “개인정체”가 우세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응집성의 강도는 Turner(1982)가 제안한 “개인정체”와 “사회정체”라는 자기개념의 하위체계 중에 어떤 것이 우세하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형평이론에서의 투입요인은 개인이 자신과 타인이 소유한 제반 특성들 중에 주어진 성과와 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간주하는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집단응집성이 강할 때에는 자신과 타인을 집단구성원으로 동일시하여 개인차가 있는 투입요인들이 무시되며, 집단응집성이 약할 때에는 자신과 타인을 개인으로 지각하게 되어 개인간의 차이가 부각될 것이므로 투입요인 중에 개인차가 있는 요인이 중시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이 성립된다.

가설 1. 집단응집성이 강할 때에는 균등원칙이 선호되고, 집단응집성이 약할 때에는 형평원칙이 선호될 것이다.

이 가설에서 함축하고 있는 것은 집단응집성에 따라 선호되는 분배원칙이 Leventhal(1976 a,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른 목적에 의해 수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집단응집성이 강하면 인간관계가 중시되어 자신의 투입의 크기에 따라 상대방에게 너그럽게 보이기 위한 인상관리의 방편으로 분배원칙이 선호되지 않을 것을 함축한다.

실 험 1

실험 1은 상기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설계하였다. 첫째, 집

단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험자를 개인별이 아니라 4인 단위로 실험에 참여하게 하여, 이들을 2인으로 구성된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상기한 조건에서 Shapiro(1975)의 실험과는 달리 피험자들에게 내집단 구성원으로서 협동과 공동운명체로서의 상호작용을 기대하게 하여 집단응집 조건을 조작하였다. 이때 특정 인물이 내집단 또는 외집단에 소속되었음을 알게 됨으로써 개입될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피험자들이 실험장면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집단 혹은 외집단에 소속되었는지를 모르게 할 것을 고려하였으며 분배자가 자신의 몫까지도 분배하는 “자신-타인” 분배 실험과라 다임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주안점이 되는 것은 차후 상호작용의 기대에 의해 조작된 응집조건에서 투입이 큰 조건에서는 물론, 투입이 작은 조건에서도 균등원칙이 선호되는가 라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이점이 기존의 차후 상호작용에 대한 선행연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된 분배원칙 선호조건의 가설로 부터 다음과 같이 예언된다.

예언. 보상분배에서 집단비용집 조건보다 집단응집 조건에서 분배자 자신의 투입크기에 관계없이 균등원칙의 적용이 우세할 것이며, 집단응집 조건보다 집단비용집 조건에서 형평원칙의 적용이 우세할 것이다.

방 법

피험자 한양대학교 상경대학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1학년 학생 중 78명(남 54명, 여 24명)이 1987년 3월 9일에서 21일 사이에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들 중 실험해명 단계에서 실험의 지시를 잘못 이해하여 응답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확인된 3명과 수행과제(단순계산과제)에 대하여 특수한 기술(주판 또는 암산의 특수기술)을 가진 피험자 3명이 투입조작의 문제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72명(남 48명, 여 24명)의 결과가 분석되었다.

절차 피험자들은 수강한 명단을 이용하여 남, 여 각각에서 무선적으로 4명씩 선정하여 남, 여 각각 동성의 4인 단위로 편성하여, 조단위로 실험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들을 조단위로 하여 본 실험의 독립변인 중의 하나인 집단응집성의 두 수준, 즉 응집조건과 비용집조건 중의 하나에 무선적으로 할당하였다. 그리고, 할당한 응집수준 내에서 이들 4인을 또 하나의 독립변인인 투입크기의 두 수준(대, 소)에 2명씩 무선할당하여 집단응집 수준(2) × 투입크기(2)의 요인설계를 하였다.

피험자들이 모두(4명) 도착하면 실험자는 이들을 실험실로 안내하여, 실험실에서 피험자들이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배치된 4개의 책상에 무선적으로 착석하게 하였다. 실험과 관련된 설명과 지시는 녹음을 하여, 실험자가 실험

의 진행절차에 따라 녹음기를 작동함으로써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의 절차를 요약하면, 실험목적, 실험목적을 위장하고 단순과제를 수행하게 한 다음 집단응집 수준을 조작하고 그후 단순과제의 수행정도로 투입요인을 조작하였다. 그 다음 보상(전표)을 부여하여 분배하게 하고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독립변인 조작점사를 하였고 실험해명을 하였다.

(1) 실험목적 위장 및 실험절차 합리화 집단응집성 조작을 위해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범주화 하고 내, 외집단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함으로써, 참가한 피험자들의 특정인물이 내집단 또는 외집단에 소속됨을 알게 되어 개입될 수 있는 요인들을 배제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위장, 합리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녹음내용을 듣게 하였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사람은 단순작업에만 종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등정신작업에만 종사하는 소위 일의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의 분업화가 일반적으로 일의 능률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일의 능률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단순작업과 고등정신작업을 한사람이 모두 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작업효과를 알아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효과를 가능한 한 일반 산업체와 같은 상황에서 알아 보기 위하여, 산업체에서 회사원들에게 일의 댓가로 임금을 주듯이, 본 실험에서도 일에 대한 보수를 실험비에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즉, 앞으로 여러분은 제한된 시간내에 단순작업과 고등정신작업이라는 두가지 일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대 산업체에서는 소집단이나 조별로 나뉘어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조로 나뉘어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명씩 나뉘어 일을 하게 되는데 편의상 A조와 B조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A조에 속한 두사람을 A1, A2 라 부르고, B조에 속한 두사람을 B1, B2 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와 같은 조가 되느냐 즉, 자기와 친한 사람이 같은 조원이 되느냐 아니면 친하지 않은 사람이 같은 조원이 되느냐가 일의 능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실험에서 여러분들은 누가 어느 조에 속하는지를 모르게 할 것이며, 또한 실험자 역시 누가 어느 조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앞으로 여러분은 제비를 뽑아 자신이 속하게 될 조와 그 조에서 자신의 번호가 결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뽑은 제비를 보시면 그곳에 기호가 적혀 있는데 그것이 자신이 속하게 될 조와 그 조에서 자신의 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뽑은 제비에 A1이라 적혀 있으면, 그 사람은 A조의 1번이 되는 것이고, A2라고 적혀있으면 A조의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실험자는 녹음기를 중단시키고, 조편성을 위한 제비 뽑기를 하도록 하였다. 제비 뽑기는 접혀진 종이 쪽지 4 장을 큰 봉투 속에 넣어서 실험자가 피험자들에게 들고 가, 한장씩 뽑게 하고 자신이 뽑은 제비 내용은 자신만이 알고 있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종이 쪽지에는 모두 A2로 기재되어 피험자들 모두가 자신이 A2인 것으로 믿게하였다.

(2) 과제 수행 제비 뽑기를 하여 조편성이 끝난 후, 단순과제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녹음 내용을 들려 주었다.

“이제 이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해야할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단순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이 단순작업은 숫자를 반복해서 더하거나 빼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단순작업이 끝난 후 여러분은 고등정신을 요하게 되는 어려운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 고등정신작업은 전문지식이 필요없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순작업이 끝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험자는 이때 녹음기를 중단시키고, 앞으로 할 단순과제의 연습 문제지를 배부하여 이를 설명하고, 연습하게 하였다. 배부된 연습문제의 내용은 한자리 숫자들이 무선적으로 7개가 나열된 것을 합산과 감산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연습문제를 통하여 앞으로 단순과제의 성질과 방법을 숙지시킨 후, 단순과제를 배부하고 문제지 상단에 자신의 기호를 적게 한 다음 10분 동안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본 과제는 연습문제에서와 같이 무선적으로 한자리 숫자 7개를 배열한 문제 60개를 16절지에 3열로 인쇄하였다. 제한 시간이 되었을 때 피험자가 문제지를 다시 문제지 봉투에 넣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이는 문제지에 기록한 피험자의 기호가 실험자에게 노출되지 않음을 피험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피험자들이 수행한 과제를 회수한 후 다음의 녹음 내용을 듣게 하여 본 과제가 실험의 위장 목적에 의하여 채점되어 피험자들에게 알려지며, 지급될 보수가 전표로 지급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실험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작업자가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잘 하였는가를 어느나 혹은 모르느냐가 그 다음의 작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실험조건은 앞에서 수행했던 작업결과를 알게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방금 수행하신 단순작업의 결과를 채점하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여러분에게 단순과제를 하신 댓가로 보수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이 때 보수는 아직 실험 중이므로 편의상 전표로 지급할 것이며, 이렇게 지급된 전표는 실험이 끝난 후 이 실험의 연구비 담당자가 보수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상기 지사가 끝난 직후 실험 보조자를 실험실에 들어오게 하였으며, 실험자는 실험 보조자에게 회수된 과제 문제지를 건네 주며 가급적 빨리 채점하여 오라고 지시하였고, 실험 보조자는 이 문제지를 가지고 퇴장하였다.

(3) 독립변인 조작 I : 집단응집 수준 집단응집 수준은 응집, 비응집의 두 조건으로서 앞으로 있을 토론의 방법과 토론 결과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으로 조작되었다. 앞으로 있을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고등정신과제를 어떤 주제에 대하여 서로 토론을 하여 이겨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에 이기기 위해서는 앞에서 수행하였던 단순 계산과제보다 고등정신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토론의 주제는 편의상 “여성의 흡연”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하여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과는 관계없이 A조는 여성의 흡연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B조는 여성의 흡연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상의 녹음된 설명이 끝난 후 집단응집과 비응집 조건이 각각 다음과 같이 조작되었다.

집단응집 조건 : 집단응집 조건은 차후 토론에서 같은 조원간의 협동이 요구되며, 토론의 승패와 이에 따른 보수에 있어서 공동운명에 처하게 함으로써 조작하였다. 이에 대한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각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입장에서 반대입장의 사람과 개별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A조와 B조가 단체적으로 대항하여 조별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조는 상대방조의 입장을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같은 조의 사람들이 서로 합심하여 상대방 조에서 반격하기 어려운 가장 좋은 공격 주장 하나를 만들어, 이를 자신 조의 대표의견으로 하여 상대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조의 공격에 대한 반격도 마찬가지로, 반격하기 전에 자신 조원들이 서로 합심하여 논리적으로 타당한 하나의 반격주장을 만들어 이를 자신조의 대표의견으로 하여 반격하게 할 것입니다. 이 토론에서의 결과는 승리와 패배 둘 중의 하나로 판정됩니다. 판정의 기준은 상대방 조의 공격에 대하여 1분 이내에 같은 조원들이 서로 합의된 하나의 통일된 주장을 만들어 내지 못하거나, 만들어 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을 때는 그조가 패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토론에서의 승리와 패배는 개인 별이 아니라 조원 전체가 함께 승리하거나, 함께 패배하게 됩니다.

고등정신과제인 토론에 대한 보수는 토론의 결과인 승리와 패배로 결정됩니다. 이때의 보수는 토론의 승, 패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고, 대신에 단순 작업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었던 전표를 토론에서 패배한 조가 승리한 조에게 모두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패배한 조의 사람들은 모두 함께 오늘 실험에 대한 보상을 일체 받지 못하게 됩니다. 2차 과제인 토론에 대한 보수를 이렇게 결정하기로 한 것은 본 실험에서 또하나의 목적이 승리와 패배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등정신작업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단비응집 조건 : 집단비응집 조건은 차후 토론에서 같은 조원들이 상호 개별적, 독립적인 관계에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조작하였다. 이에 대한 지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론의 방식은 개별적으로 각자가 조에 따라 부여받은 입장에서 반대입장을 부여받은 다른 사람과 서로 대항하여 개별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편의상 A1은 B1과, A2는 B2와 서로 대항하여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본 토론이 개별적인 토론이기 때문에 같은 조의 사람이 서로 도와 주어서는 절대로 안되므로 서로가 도울 수 없도록 할 것이며, 오직 자기 자신의 힘으로만 상대방을 이겨야 합니다. 토론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공격하고 또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이루어 지는 데; 토론의 결과는 같은 조의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각자가 개별적으로 승리와 패배 둘 중의 하나로 판정됩니다. 판정의 기준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하여 1분 이내에 논리적으로 타당한 반격을 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토론에서의 자신의 승리와 패배는 자신 조원과는 관계없이 자신 스스로가 상대방이 반격하기 어려운 공격주장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등정신과제인 토론에 대한 보수는 토론의 결과인 승리와 패배로 결정됩니다. 이때의 보수는 토론의 승, 패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고, 대신에 앞서 단순작업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었던 전표를 토론에서 패배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에게 모두 주어야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패배한 사람은 오늘 실험에 대한 보상을 일체 받지 못하게 됩니다. 2차 과제인 토론에 대한 보수를 이렇게 결정하기로 한 것은 본 실험에서 또하나의 목적이 승리와 패배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등정신작업효과를 알아 보려고 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각 조건에서 녹음 지시가 끝난 후 실험자는 피험자들에게 연습문제를 뒷면을 이용하여 앞으로 있을 토론에 대한 구상을 하도록 하였다.

(4) 독립변인 조작Ⅱ : 투입크기 투입의 크기는 피험자들이 앞서 수행한 단순과제에 대한 거짓 채점결과를 A1과 A2의 상대적 비율로 제공 함으로써 조작되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피험자들이 토론 구상을 1~2분 하였을 때, 실험 보조자가 실험실에 다시 나타나, 채점결과와 보수로 지급될 전표 봉투를 실험자에게 건네 주면서, B조의 채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채점이 완료된 A조의 결과를 먼저 가져 왔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지시한 바 대로 A조의 결과를 4사람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고 말을 하고, B조의 채점이 끝나는 대로 다시 가져 오겠다고 하면서 퇴장하였다. 그 후에 실험자는 피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채점결과를 4사람 모두에게 전해 주었다.

“여러분이 이미 알 수 있듯이, 실험실시자는 여러분이 무슨 조의 몇 번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는 이 실험에서 산업체에서 작업감시자가 작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조의 채점결과를 모두 4장씩 옮겨 적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겠습니다. 우선 A조의 채점결과만이 왔음으로 모두에게 그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A조가 아닌 사람은, 즉 B조에 속한 사람은 단지 참고적으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채점의 결과는 여러분이 올바르게 계산한 갯수 자체보다는 자신의 조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했는지 또는 못했는지가 의미있기 때문에, 각 조의 전체수행량을 100으로 하였을 때 각 조원이 수행한 정도를 %로 바꾸어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실험자는 “A조 채점결과”라고 적혀있는 엽서봉투를 피험자들에게 전

달해 주었다. 엽서봉투 속에 들어있는 채점결과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투입의 크기를 조작하였다.

투입의 크기는 채점결과표에 A조의 전체 수행량을 100으로 하였을 때, A1, A2의 상대적 수행정도(%)로 조작되었는데, 투입이 큰 조건은 A1 : 39%, A2 : 61%로 2장에 기재하였으며, 투입이 적은 조건은 A1 : 61%, A2 : 39%로 2장에 기재하여 조작하였다. 이 채점표를 피험자에게 무선적으로 나누어 줌으로서 피험자를 투입의 두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게 하였다.

(5)종속변인 측정. 본 실험의 종속변인은 피험자들이 자신 조에 지급된 단순계산 과제에 대한 보수를 자신과 자신조원에게 분배하게 하였을 때 적용한 분배원칙이었다. 이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피험자들이 채점결과를 확인한 후, 실험자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이미 앞에서 녹음으로 설명하였듯이, 이제 단순작업에 대한 보수를 전표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런데 A조만 채점이 끝났으므로 A조에 배당된 전표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A조원들은 A1이라고 적힌 편지봉투와 A2라고 적힌 편지봉투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전표를 나누어 넣어 주십시오.”

상기한 지시를 한 후 실험자는 전표가 들어있는 “A조 전표”라고 적혀있는 엽서봉투와, A1, A2라고 각각 적혀있는 빈 편지봉투를 피험자 모두에게 건네 주면서, “누가 A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주겠습니다. 따라서, B조원은 분배를 하지 말고 계속 토론구상을 하시고, A조원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 하였다. 전표는 가로×세로가 3×4 cm인 종이쪽지에 연구자의 도장이 찍힌 것이었으며, 전부 10장을 넣어 주었다.

(6)독립변인 조작검사. 피험자들의 전표분배가 모두 끝나면 독립변인 조작검사를 위한 설문지가 들어있는 대형봉투를 나누어 주고, 설문지를 꺼낸 후 지금까지 전달된 모든 것(연습문제지, 채점결과, 전표봉투 등)을 대형봉투에 넣게 하였다. 그 후 토론을 하기 전에 우선 몇가지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는 집단응집수준 조작과 투입크기조작에 관련된 문항들이 제시되었던 바, 투입조작 검사는 1개 문항으로서 자신이 자신 조원에 비해 단순계산작업을 얼마나 잘 하였는가를 “매우 못했다”를 -5, “똑같다”를 0, “매우 잘했다”를 5로 하는 11점 동안 척도상에 평정하게 하였다. 집단응집 조작검사를 위해서는 집단응집 정도와 관계될 것으로 간주한 4개의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4개 문항의 내용은 이 실험에서 느껴지는 같은 조원과의 협동심, 공동운명감, 결속감 및 책임감을 물음한 것이었으며, 이들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를 0, 그리고 “매우 느낀다”를 10으로 한 11점 동안 척도

상에 평정하게 하여 이들의 합한 점수를 집단응집 수준의 지표로 하였다. 따라서, 집단응집 점수는 최하 0, 최고 40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집단응집이 클수록 점수가 크게 된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 완료된 후 실험이 끝났음을 알린 다음, 실험의 본래 목적을 설명하고 실험목적과 절차를 위장하게 된 이유를 설명, 사과하였다. 또한, 실험목적 및 내용이 누설되어서는 안됨을 설명하여 피험자들로부터 이를 지킬 것을 약속받았다.

결과 및 논의

독립변인 조작 검증

투입 크기 : 자신이 상대방 보다 잘한 정도 또는 잘못된 정도에 대한 문항의 응답을 투입크기 (대, 소) × 집단응집 수준 (응집, 비응집) 으로 변량분석을 한 결과, 투입요인의 주효과 만이 유의하였다 ($F = 169.33$, $df = 1/68$, $MSe = 1.68$, $p < .01$). 투입이 큰 조건의 평균은 2.33 이었고, 투입이 작은 조건의 평균은 -1.64 로써, 조작한 투입크기에 따라 상대방보다 잘한 것으로, 또는 못한 것으로 지각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집단응집 수준 : 집단응집과 관련된 같은 조원에 대한 협동감, 공동 운명감, 결속감, 책임감에 대한 문항을 합산한 점수를 응집지표로 하여 이를 투입크기 × 응집수준으로 변량분석한 결과, 응집수준의 주효과 만이 유의하였으며 ($F = 5.97$, $df = 1/68$, $MSe = 86.72$, $p < .05$), 응집조건의 평균이 23.94, 비응집조건의 평균이 18.58 로 전자가 후자보다 응집점수가 높아 응집수준 조작이 확인되었다.

분배원칙 적용

형평원칙과 균등원칙의 선호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자의 실험조건에서 피험자들이 분배한 전표를 형평분배와 균등분배, 그리고 기타의 세범주로 분류하였다. 이 때 투입이 큰 조건에서 자신과 타인의 투입비율이 61% : 39% 이므로 이 비율과 동일하게 자신과 타인의 전표를 6장 : 4장으로 분배한 경우와, 투입이 작은 조건에서는 그 역으로 자신과 타인의 전표를 4장 : 6장으로 분배한 경우를 형평으로, 그리고 투입크기에 관계없이 자신과 타인의 전표를 5장 : 5장으로 분배한 경우를 균등으로 하고, 그밖의 경우를 기타로 범주화한 결과, 모든 피험자가 균등과 형평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투입이 큰 조건이나 투입이 작은 조건 각각의

〈표 1〉 투입크기 및 집단응집 수준별 분배원칙 적용빈도

분배원칙	투입크기			
	대		소	
	집단응집수준		집단응집수준	
	응집 (n=18)	비용집 (n=18)	응집 (n=18)	비용집 (n=18)
균 등	13(72.2)	3(16.2)	9(50.0)	1(5.6)
형 평	5(27.8)	15(83.8)	9(50.0)	17(94.4)

주 : ()안은 각 응집수준 내에서의 %

모두에게 균등분배는 집단비용집 조건보다 집단응집 조건에서, 형평분배는 집단응집 조건보다 집단비용집 조건에서 우세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집단응집 수준 별 분배원칙의 빈도분포는 투입이 큰 조건에서나 ($\chi^2 = 11.25$, $df = 1$, $p < .01$), 투입이 작은 조건에서나 ($\chi^2 = 8.86$, $df = 1$, $p < .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투입크기를 묶어서 집단응집, 비용집별로 균등과 형평 분배의 비율을 보면, 집단응집 조건에서는 균등이 61%, 형평이 39%로 균등이 우세한 반면, 집단비용집 조건에서는 균등분배가 11%, 형평분배가 89%로 형평분배가 우세하였으며, 이를 검증한 결과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chi^2 = 19.51$, $df = 1$)

각각 실험조건 내에서 개별적으로 형평분배와 균등분배를 직접 비교하여 볼 때, 집단비용집 조건에서 투입의 대, 소 조건 모두에서 형평분배가 균등분배보다 월등히 우세하였고, 또한 집단응집 조건에서도 투입이 큰 조건에서는 형평분배보다는 균등분배가 우세하여 본 실험의 가설과 일치된다. 그러나 집단응집조건에서 투입이 적은 경우에는 균등과 형평분배의 비율이 각각 50%로서, 예외적으로 이 조건에서는 본 실험에서 기대한 바대로 균등분배가 형평분배보다 우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 연구에서의 가설이 지지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투입이 적은 조건에서 균등분배의 비율이 집단비용집의 경우에는 균등분배가 5.6%에 불과하지만, 집단응집 조건에서의 균등분배가 50%로 나타나 집단비용집 조건 보다는 집단응집 조건에서 균등원칙을 더 많이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집단응집의 처치가 균등원칙의 선호를 증가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투입이 작은 조건에서도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는 Shapiro(1975)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차후 상호작용이 기대되던 피험자들이 인상관리를 중시하게 되어, 투입이 큰 피험자들은 균등원칙을 선호하고, 투입이 적은 피험자들은 형평원칙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실험에서의

차후 상호작용은 Shapiro의 실험에서와는 달리 피험자들이 앞으로 동일 집단구성원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상호협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써 구성원간의 결속감을 증가시켰던 바, 이러한 조건에서는 인상관리 보다는 분배정의의 원칙으로서 균등원칙이 선호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II. 불형평과 불균등의 효과

선행연구들에서 피분배자에게 지각된 불형평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는 형평이론에 의해 설명되어 왔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초기의 Adams(1965)의 이론을 “불형평 이론”이라고 하였듯이, 형평이론은 불형평에 대한 이론이다. 이미 살펴 보았듯이, 이 이론의 핵심은 개인들이 불형평을 지각하면 “불쾌한 긴장(distress)”이 경험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형평상태로 환원하도록 동기화 된다는 데 있다. 즉, 형평보다 과다한 성과를 받았을 때는 죄책감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불쾌한 정서가 경험되며, 형평보다 적은 성과를 받았을 때는 분노라는 불쾌한 정서가 경험되어 개인은 불형평을 제거하도록 동기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개념적 틀에서 보면 이미 언급하였듯이 불형평이 항상 불쾌한 긴장을 유발하고 형평화되도록 동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형평이 불공정한 것으로 지각되는 조건에서만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형평원칙이 정의 원칙으로 선호될 때에 불형평이 해소되도록 동기화될 것으로 본다.

한편, 형평이론에 입각한 연구들에서는 불균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설명이나 실증적 증거가 결여되어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형평이론은 정의 원칙으로서 형평원칙만을 전제하기 때문에 애당초 불균등이란 불공정의 개념이 없다.

그러나, 분배원칙의 선호에 주관심을 두는 다원칙론의 입장에서는 불형평만이 아니라, 균등원칙이 선호되는 조건에서 불균등도 불쾌한 긴장을 야기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다원칙론의 입장에서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개인이 특정 분배원칙을 선호할 때 이와는 다른 분배를 하여 주면 불쾌감을 경험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균등이 불쾌한 긴장을 야기한다면 개인은 이를 해소하도록 동기화될 것은 쉽게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맥락에서 앞서 설정하였던 분배원칙 선호조건의 가설을 전제하여 불형평과 불균등의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집단응집성이 강할 때에는 불형평 보다는 불균등을 해소하려 하고,

집단응집성이 약할 때에는 불균등 보다는 불형평을 해소하려 할 것이다.

상기한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불형평과 불균등 각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불형평과 불균등의 해소책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문제에 있어서, 형평이론은 적어도 불형평에 관한 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한다. 이 이론에서는 투입과 성과를 실제로 조절하여 직접적으로 형평을 회복하는 방법과 인지적으로 왜곡하여 심리적으로 형평을 회복하는 방법, 그 밖에 비교대상을 바꾸거나, 교환 또는 분배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는 방법등을 불형평 해소책략으로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책략들 중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불형평을 불완전하게 해소하는 책략보다 완전하게 불형평을 해소하는 책략이 선호되며, 책략을 적용하였을 때, 자신의 부담(cost)이 적은 책략이 선택된다는 것이다.

형평이론의 고유성은 상기한 불형평 해소책략으로 불형평의 효과를 설명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기한 책략들 중에 실제적 투입과 성과의 조절을 통한 형평회복 방법을 놓고 볼 때, 투입요인을 작업수행으로 하고 성과요인을 일에 대한 보수로 규정한다면, 보수지급이 작업수행에 미치는 효과에 예언된다. 따라서 형평이론은 초기에 주로 산업장면에서의 동기이론으로 응용되었던 것이다. 그후 Walster 등 (1976)이 사업관계, 도움관계, 친밀관계 등 제반 사회적 관계를 형평이론에 입각한 투입과 성과의 교환 또는 분배라는 개념적 틀에서 개인들의 사회적 행동을 불형평 해소책략으로 설명하여 보다 일반적인 사회심리학적 이론으로 확장하였다.

그러나 형평이론에는 불균등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이론에서 불균등 해소책략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찾아 볼 수 없다. 한편 다원칙론의 입장에서, 비록 불균등이란 개념이 성립되고 개인들이 균등선호 조건에서는 불균등을 해소하려 할 것임을 함축하고 있지만 그 해소책략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불균등을 형평분배에 의한 불균등으로 제한시켜 보면 주어진 불균등은 투입과 성과의 조절을 통하여 균등화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록 형평이론에서 불균등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불균등의 해소책략으로서 불형평에서와 같이 투입과 성과를 조절할 것으로 하여 성과를 조절할 수 없는 조건에서 투입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가설 2를 검증하고자 한다.

실 험 II

본 실험에서는 투입조절과 관련된 상기 가설을 검증함에 있어서 투입을 감

소시킴으로써 불형평과 불균등을 해소하려는 측면만을 고려하였다. 형평이론에서는 불형평 해소책략들 중에 개인의 이기적 속성을 감안하여 자신의 손실이 적은 방법이 선택될 것임을 예언한다(Walster 등, 1976). 이를 감안할 때,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의 실제적 투입을 증가시키는 책략은 채택되기 어려울 것이다(한덕웅, 1983 참조). 그러나, 투입을 감소하여 불형평이 회복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상기 맥락에서 볼 때 투입조절 책략이 불형평의 해소책략으로 쉽게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형평원칙과 균등원칙의 선호조건에 따른 불형평의 상대적 효과를 보다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투입을 감소함으로써 불형평과 불균등이 해소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본 실험의 가설을 검증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투입요인을 작업수행으로 하여 1차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불형평과 불균등을 조작한 후에 2차과제를 수행하게 하여 2차과제의 수행을 스스로 조절함으로써 불형평과 불균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와 같이 개인 자신의 투입이 상대방 보다 큰 조건만을 조작하고 형평분배나 균등분배를 하였을 경우, 본 가설에 입각하면 다음과 같이 예언된다. 즉, 형평분배에 의한 불균등은 집단응집 조건에서 불쾌한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집단응집 조건에서 형평분배를 하면, 과다불균등에 의한 불쾌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험자들이 차후 수행량을 감소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다불균등 조건은 자신의 보상이 균등원칙을 기준으로 할 때 타인보다 많은 조건이므로, 균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차후 수행에서 상대방보다 보상을 적게 받아야 한다. 이때 보상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투입이 상대방 보다 적어야 되므로, 자신의 과제수행을 이전 보다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균등분배에 의한 불형평은 집단비용집 조건에서 불쾌한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집단비용집 조건에서 균등분배를 하면, 과소불형평에 의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피험자들이 차후 수행량을 감소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균등분배에 의한 과소불형평은 작업수행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상을 주기 때문에 투입의 크기에 비해 성과를 적게 받는 조건이므로, 형평화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투입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차과제와 동일한 2차과제를 수행하게 할 경우, 연습의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후속과제의 수행에 대한 피험자들의 동기가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연습의 효과로 인해 1차과제보다 2차과제의 수행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연습 때문에 2차과제의 수행이 크게 증가된다면, 상기한 예언에서 수행의 감소를 1차과제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연습의 효과를 고려하면, 가설 2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할 수 있다.

예언 1. 집단응집 조건에서 형평분배를 하면, 균등분배를 할 때보다 후속과제의 수행의 증가가 적을 것이다.

예언 2. 집단비용집 조건에서 균등분배를 하면, 형평분배를 할 때보다 후속과제의 수행의 증가가 적을 것이다.

본 실험에 또 한가지 고려한 점은, 불형평과 불균등의 해소는 차후 성과의 조절로써도 가능하기 때문에, 성과조절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투입조절만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차과제에서 형평분배를 하여 준 경우에는 앞으로 후속과제에서도 투입에 비례하여 실험자가 보상을 분배하여 줄 것으로 믿게 하며, 1차과제에서 균등분배를 하여 준 경우에는 앞으로 실험자가 균등분배를 하여 줄 것으로 믿게 하여 피험자 스스로가 성과를 조절할 수 없도록 고안하였다.

방 법

피험자 부산대학교에서 교양심리학을 수강하는 간호학과 1학년 여학생 48명과 한양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수강하는 1학년 여학생 24명을 4인 1조로 하여, 각각의 대학에서 1987년 3월 16일에서 4월 20일 사이에 각 조별로 본 실험에 참가토록 하였다. 이들 중 2개조에서 1명씩 불참하여 각각에 위장 피험자(여학생)를 보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고, 참여한 전체 피험자 70명 중 절차에서의 실수로 인한 1명과 과제수행이 예외적으로 극히 불량하여 과제수행의 성실성이 의심되는 2명의 피험자를 결과처리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67명의 결과가 처리되었다.

절차 피험자들은 수강자 명단에서 무선적으로 4명씩 선정, 실험참가조로 하고 이들 4인을 단위로 하여 집단응집 수준의 두 조건중 한조건에 무선할당하였고, 이들을 다시 투입크기(2)×분배방식(2)의 4조건에 각각 1명씩 무선할당하였다. 앞 실험의 절차를 개관하면 실험목적에 위장하고 1차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집단응집 수준을 조작하였다. 그 후 1차과제에 대한 투입과 보수(전표)분배로 불형평과 불균등을 조작한 다음, 2차과제를 수행케 하고 사후 설문문을 통해 독립변인 조작을 검사하였다.

(1) 실험 목적과 절차의 위장 및 합리화 본 실험에서 본래의 실험목적에 위장하고 후속되는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작은 실험 1과 동일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험자들은 자신들이 A조와 B조 두 집단으로 구분되며, 모두 자신이 A조의 2번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상기한 실험 목적 및 절차의 위장을 끝낸 후, 단순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때 실험 1과는 달리 동일한 과제를 두번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리고, 1차과제 수행과 2차과제수행 각각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2) 1차과제 수행 . 실험 1과 동일한 과제를 주어 동일한 방법으로 하게 하였다. 즉, 실험 1에서 사용한 연습문제지를 배부하여 과제의 성질과 방법을 숙지시킨 후, 본 과제(실험 1과 동일)를 주어 수행하게 하였다. 실험자는 5분의 제한시간이 되면 과제 수행을 중단시키고, 실험 1에서와 같이 문제지 위에 피험자 자신의 기호(A2)를 기록하게 한 후 다시 문제지 봉투에 넣고 회수함으로써, 피험자들이 자신의 조와 번호가 실험자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였다. 이때 실험보조자가 실험실에 들어오며, 실험자는 회수한 분배지 봉투를 전해주고, 누가 A조이고 B조인지 모르기 때문에, 채점결과표를 가져올 때 A조 결과표와 B조 결과표를 각각 4부씩 작성하여 오라고 하였다.

(3) 독립변인 조작 I : 집단응집 수준 . 1차과제수행 후 집단응집 수준을 조작하기 위한 절차도 실험 I에서와 동일하였다(세부내용은 실험 I 참조).

(4) 독립변인 조작 II : 불형평과 불균등 . 피험자들이 토론을 구상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실험보조자가 실험실에 들어와서 앞서 지시한 대로 A조와 B조의 채점결과를 각각 4부씩 준비하였다고 말하면서, 실험자에게 A조 또는 B조라고 각각 적혀 있는 8장의 서류봉투를 전해주고 퇴장하였다. 이때 실험자는 피험자들의 조를 모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A조 채점결과와 B조 채점결과를 줄 것이며, 채점결과는 각조의 수행량에서 각 조원이 수행한 정도를 상대적인 비율로 환산하여 알려주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단, 이때 실험 1과는 달리 A조와 B조의 과제수행을 모두 채점하여 주는 것으로 위장하였기 때문에 피험자들에게 자기조의 봉투만을 뜯어 보라고 하였다(각 봉투는 봉해 있었다). 또한 실험 1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지시를 첨부하였다.

“여러분이 자신 조의 봉투를 뜯어보면 채점결과라고 적힌 엽서 봉투와 A조의 경우 A1, A2, B조의 경우 B1, B2라고 각각 적힌 두장의 전표봉투가 있을 것입니다. 채점결과 봉투를 열어 보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조원이 2차과제를 수행한 상대적 비율이 적혀 있고, 2차과제에 대하여 실험책임자가 각 조원에게 분배하여 준 전표의 장 수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본 다음 전표봉투를 확인하여 적혀진 전표 수 대로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형평과 불균등은 봉투 속에 있는 채점결과 및 보상분배표로써 조작되었다. A조로 표시된 채점결과표에는 A조 전체 수행량을 100%로 하였을 때, A1, A2 각각이 상대적으로 수행한 정도를 모든 조건에 A1이 31%, A2가 69%로 각각 기재하였다. 그리고, 형평분배의 경우에는 전표의 수를 A1은 3장, A2는 7장으로 기재하고, 앞으로도 수행정도에 비례하여 분배할 것으로 지

시하였고, 균등분배의 경우 A1과 A2 각각에 5장을 기입하고 앞으로는 수행정도를 무시하고 똑같이 보상을 분배할 것으로 지시하였다. 그리고, 실험 1에서 사용되었던 전표와 동일한 형태의 전표를 A1과 A2로 각각 적혀있는 편지봉투에 채점표에 기재된 전표수 대로 넣어주어 이를 확인하게 하였다. 참여한 4명의 피험자중 2명에게는 형평분배, 그리고 나머지 2명에게는 균등분배 채점표를 무선적으로 배분하였다.

(5) 2차과제 수행. 실험자는 2차 과제가 들어있는 봉투를 나누어 주고 2차과제는 숫자가 다를 뿐이지 1차과제와 동일한 것으로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수행시간은 1차과제와 같이 5분간 하게 하였으며, 실제의 2차과제는 숫자만 달리 배열 하였을 뿐 문제의 내용과 양은 1차과제와 동일하였다. 과제수행이 끝나면 문제지 위에 자신의 기호(A2)를 기입하게 한 후 다시 문제지 봉투에 넣게 하고 회수하였다. 이 때 실험보조자를 실험실에 들어오게 하였고, 실험자는 실험보조자에게 회수된 1차과제와 2차과제를 전해 주면서 가급적 빨리 채점해 오도록 부탁하였고, 실험보조자는 이를 가지고 퇴장하였다.

2차과제 수행이 끝난 후 실험 I과 동일한 설문조사로 독립변인 조작검사를 하였고 실험해명을 하였다.

실험설계 및 결과분석 본 실험의 설계는 집단응집 수준(2)×분배방식(2)×과제수행시기(2)에서 과제수행시기가 피험자내 변인으로 반복된 요인설계이었다. 피험자는 집단응집과 비응집 조건에 4인 1개조가 무선 할당된 후, 다시 4명 중에 2명은 형평분배, 그리고 다른 2명은 균등분배로 할당되어 한번의 시행에서 2명은 동일조건에서 측정되었다. 따라서, 결과분석에서는 각 시행에서 동일조건에 있는 2명의 자료를 평균한 점수를 1회 관찰치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에 피험자의 불참으로 위장 피험자를 참석시킨 조건과 참가한 피험자 중 결과처리에서 누락된 조건에서는 동일조건이 1명이 되므로 1명의 응답을 1회 관찰치로 처리하였다. 이상의 과정에서 피험자 수는 67명 이었으나, 분석단위의 사례수는 각 조건 모두에서의 사례수는 9개로 동일하게 되어 전체 36개 관찰치로써 분석되었다.

한편, 종속변인인 작업수행의 정도는 본 과제가 속도검사(speed test)이므로 수행량과 질의 측면에서 모두 검토하기 위하여 1차와 2차 수행에서 시도한 문제수를 주 종속변인으로 하고, 이를 채점한 정답수를 부수적인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각을 분석하였다.

결 과 및 논 의

독립변인 조작검증

집단응집 수준 : 실험 1 과 동일하게 사후 설문지에서 같은 조원에 대한 협동감, 공동운명감, 결속감 및 책임감 각각을 합산한 점수를 집단응집 정도의 지표로 하였다. 이를 집단응집 수준과 분배방식의 2×2 로 평균을 산출하고 변량분석 결과, 집단응집 수준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 = 13.23$, $df=1/32$, $MSe = 30.48$, $p < .01$), 집단응집 수준 별 응집점수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집단응집 조건 평균이 22.11로서 비응집 조건의 평균 15.42 보다 높아 집단응집 처치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집단응집 수준과 분배방식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여 ($F = 9.20$, $df = 1/32$, $p < .01$), 응집점수가 균등분배의 경우 집단응집 조건이 평균 23.56 로 비응집 조건의 평균 11.28 보다 월등히 높았으나(단순 주효과 : $F = 22.25$, $df = 1/32$, $p < .01$), 형평분배의 경우에는 응집 조건의 평균이 20.67 로 비응집 조건의 평균 19.56 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단순 주효과 : $F = 0.18$, $df = 1/32$, ns).

투입조작 : 본 실험에서의 투입의 크기는 자신과 타인의 수행량의 비가 7 : 3 으로 하여 모두 투입이 큰 조건으로 조작하였다. 1 차과제에서 자신이 상대방보다 얼마나 잘했는지를 “매우 못했다”를 - 5, “매우 잘했다”를 + 5 로 하는 동간척도에 평정한 점수를 집단응집과 분배방식의 2×2 로 평균을 산출하고 변량분석을 한 결과, 분배방식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 = 4.25$, $df = 1/32$, $p < .05$). 분배방식 별 투입차 지각의 평균은 형평분배가 평균 2.53 으로 균등분배의 평균인 1.78 보다 높아, 같은 투입처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평분배 조건의 피험자들이 균등분배 조건에서 보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욱 잘하였던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형평분배와 균등분배 조건 각각에서의 투입차 지각점수를 자신이 수행한 정도가 상대방과 똑같은 경우인 ‘0’을 기준으로 하여 t 검증(단일표본, 일방검증)을 한 결과 모두 유의하여(형평분배 : $t = 9.58$, $df = 17$, $p < .01$; 균등분배 : $t = 6.85$, $df = 17$, $p < .01$), 모든 조건의 피험자들이 1 차과제에서 상대방보다 잘했다고 지각하여 투입수준이 조작이 확인되었다.

과제 수행

본 실험에서 사용한 과제는 제한된 시간에 가급적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단순 계산과제이었다. 따라서, 피험자들의 과제수행 동기는 일차적으로 피험자들이 과제수행에서 시도한 문제수에 반영될 것이므로, 정답여부에 관계없이 시도문제수를 일차적인 종속변인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시도문제수. 정답여부에 관계없이 피험자들이 1차와 2차과제에서 수행한 문제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집단응집 수준×분배방식으로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집단응집 수준 및 분배방식 별 1차와 2차수행의 시도문제수 평균

분 배 방 식	집 단 응 집 수 준			
	응 집		비용집	
	수 행 시 기		수 행 시 기	
	1 차	2 차	1 차	2 차
형 평	22.56(2.66)	25.39(3.77)	23.56(4.82)	28.17(4.51)
균 등	22.94(5.49)	27.61(5.09)	20.83(3.28)	22.06(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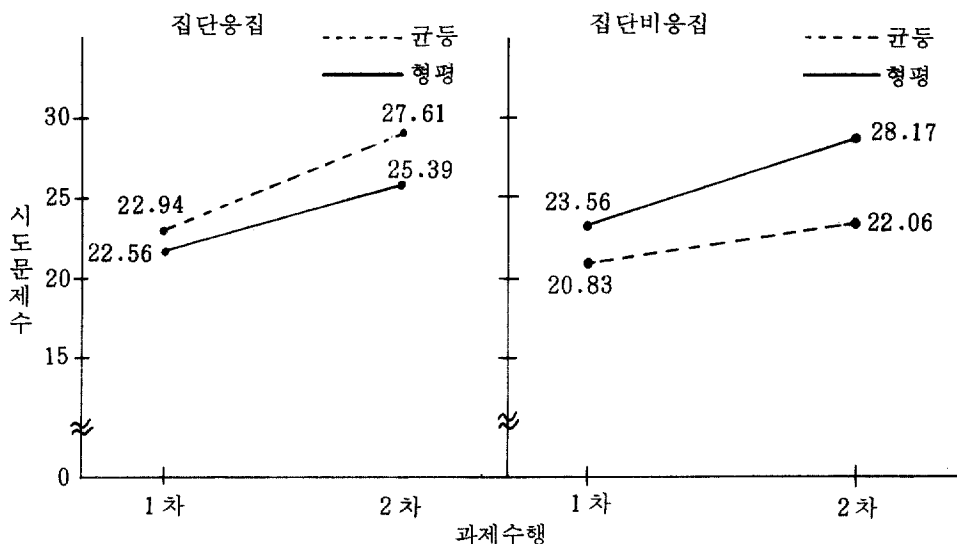
주 : 각 조건의 사례수는 n=9. 1차 수행은 보상분배 이전에, 2차 수행은 보상분배 이후 수행한 것임. () 안은 SD.

<표 2>를 변량분석한 결과 수행시기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여 ($F = 109.40, df = 1/32, Mse = 1.83, p < .01$), 1차과제와 2차과제에서의 수행 문제수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1차과제의 평균이 22.47개인 반면에, 2차과제에서는 평균이 25.81개로서 평균 3.34개가 증가하였다.

한편 집단응집 수준과 분배방식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여 ($F = 4.40, df = 1/32, Mse = 33.42, p < .05$), 집단응집 수준에 따라 균등분배와 형평분배를 하였을 때 1차와 2차과제에서 수행한 전체 문제수가 다를 수 있다. 각 조건에서의 시도문제수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집단응집 조건에서는 형평분배가 평균 23.98개, 균등분배가 25.28로 균등분배를 하였을 때가 형평분배의 경우보다 시도문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집단비용집 조건에서는 이와 반대로 형평분배를 하였을 때가 평균 25.87개로 균등분배에서의 평균 21.45개 보다 시도문제수가 많았다.

그러나, 집단응집성×분배양식×과제수행시기의 3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여 ($F = 16.75, df = 1/32, Mse = 1.83, p < .01$), 집단응집 수준에 따른 분배 원칙의 효과가 1차과제와 2차과제 간의 시도문제수의 차이에 달리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3원 상호작용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 2에 기초하여 집단응집 수준으로 나누어 형평분배와 균등분배에 따른 1차 시도문제수와 2차 시도문제수를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응집 조건에서 형평분배를 하였을 때 1차수



〈그림 1〉 집단응집 수준 및 분배방식별 1차와 2차수행에서의 시도 문제수

행에서보다 2차수행에서 시도문제수가 2.83개 증가하였고(단순 주효과 : $F = 19.69$, $df = 1/32$, $p < .01$), 균등분배를 하였을 때 4.67개가 증가하여(단순 주효과 : $F = 53.63$, $df = 1/32$, $p < .01$)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균등분배보다 형평분배를 하였을 때 2차과제에 대한 수행량의 증가가 유의하게 작았다(단순 2원상호작용효과 : $F = 4.16$, $df = 1/32$, $p < .05$). 이 결과는 본 실험에서의 예언 1과 일치한다.

한편, 집단응집 조건내에서 각 분배방식에 따른 보상분배 이전의 1차수행 시도문제수의 평균이 거의 유사하여(형평 : 22.56; 균등 : 22.94)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단순 주효과 : $F < 1.00$, $df = 1/64$), 보상분배 이후의 2차수행에서는 균등분배 조건이 27.61개, 형평분배 조건이 25.39개로 후자가 전자보다 시도문제수가 적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단순 주효과 : $F = 1.26$, $df = 1/64$, ns).

집단비용집 조건에서는 형평분배를 하였을 때 시도문제수가 4.61개 증가한 반면에(단순 주효과 : $F = 52.26$, $df = 1/32$, $p < .01$), 균등분배를 하였을 때에는 증가량이 1.23개로 거의 증가하지 않아서(단순 주효과 : $F = 3.72$, $df = 1/32$, $p < .10$), 분배원칙에 따른 증가량의 차이가 유의하였다(단순 2원상호작용효과 : $F = 14.05$, $df = 1/32$, $p < .01$). 이 결과는 본 실험에서의 예언 2와 일치한다. 한편, 집단비용집 조건에서 보상분배 이전에 수행했던 1차과제수행에서 균등조건에 할당되었던 피험자들의 시도문제수 평균이 형평분배 조건에 할당되었던 평균보다 많았으나(균등 : 23.56; 형평 : 20.83) 그 차

이가 유의하지 않았고(단순 주효과: $F = 1.90$, $df = 1/64$, ns), 보상분배 이후의 2차수행에서는 균등분배를 받은 피험자들의 시도문제수 평균 28.17 개로서 형평분배를 받은 피험자들의 시도문제수 평균 22.06 개 보다 월등히 높아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단순 주효과: $F = 9.53$, $df = 1/64$, $p < .01$).

한편, 예언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본 실험에서의 가설은 형평분배를 할 경우에는 집단비용집 조건에서보다 집단응집 조건에서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후속과제의 수행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균등분배를 하면 이와는 반대로 집단응집 조건보다 비용집 조건에서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후속과제의 수행이 증가하지 않을 것을 함축한다. 이에 입각하여 상기한 3원 상호작용을 분배원칙 별로 집단응집 수준에 따른 후속과제의 시도문제수의 증가량으로써 검토해 볼 수 있다.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균등분배 1차과제와 2차과제의 시도문제수의 차이를 보면 집단응집 조건에서는 4.67 개가 증가한 반면에, 비용집 조건에서는 1.23 개가 증가하여 집단응집 조건에서 보다 수행의 증가량이 유의하게 작았다(단순 2원상호작용효과: $F = 14.55$, $df = 1/32$, $p < .01$). 한편, 형평분배의 경우에는 집단응집 조건에서는 시도문제수의 증가량이 2.83 개로서 집단비용집 조건에서의 증가량인 4.61 개 보다 적었으나, 통계적으로 5% 수준에는 다소 미달하였다(단순 2원상호작용효과: $F = 3.90$, $df = 1/32$).

시도문제수의 정답수. 본 실험에서와 같이 제한된 시간에 정답이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할 경우 피험자들의 과제 수행에 대한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과제수행의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실험에서 검증하려고 한 불형평과 불균등의 효과는 차후 과제수행에 대한 동기의 감소로 검증되는 바, 2차과제에서의 수행량, 즉 시도문제수가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반드시 수행동기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본 실험의 절차에서 피험자들이 수행한 과제는 채점을 하여 정답수로써 평가되는 것으로 믿게하였다. 따라서 피험자들이 2차과제에서 자신의 정답수를 높이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도 시간의 제한 때문에 시도문제수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서의 시도문제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본 가설의 예언대로 불형평과 불균등이 집단응집 수준에 따라 2차과제의 시도문제수가 감소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답수를 높이려는 동기 때문이 아님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시도문제수의 분석결과로, 본 가설이 검증되기 위해서는 시도문제수의 감소가 적어도 정답수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맥락에서 피험자들의 시도문제를 채점하고 그 정답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조건 별 정답수의 평균은 표3과 같다.

정답수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에서 수행시기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49.35$, $df=1/32$, $Mse=4.50$, $p<.01$). 수행시기 별로 정답수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1차과제에서 19.20개인 반면에, 2차과제에서 22.71개로 보상분배 이후에 평균 3.51개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집단응집 수준 $\times$ 분배방식 $\times$ 수행시기의 3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여 ($F=9.15$, $df=1/32$, $Mse=4.50$, $p<.01$), 집단응집 수준 각각에서 형평분배와 균등분배에 따른 정답의 증가량이 다를 수 있다. 이 3원 상호작용을 집단응집 수준 별로 도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집단응집 수준 별로 분배방식 이후의 정답수의 증가량을 보면 집단응집 조건에서 형평분배를 하였을 때 정답이 보상분배 이전(1차수행)보다 2.72개 증가한 반면(단순 주효과: $F=7.40$, $df=1/32$, $p<.05$), 균등분배를 하였을 때는 6.00개 증가하여(단순 주효과: $F=36.00$, $df=1/32$, $p<.01$), 형평분배에 의한 정답증가량이 균등분배에 의한 그것보다 작았다(단

〈표 3〉 집단응집수준 및 분배방식별 1차와 2차 수행에서의 정답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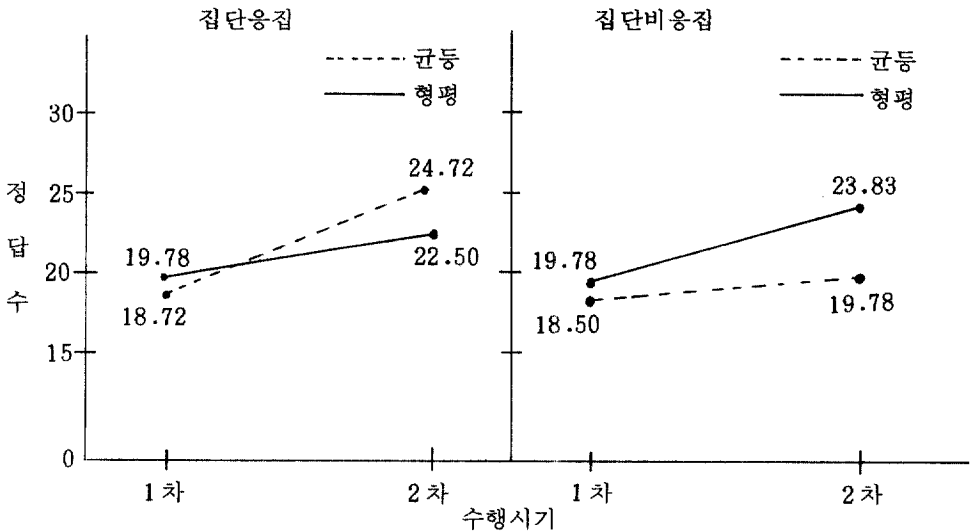
분 배 방 식	집 단 응 집 수 준			
	응 집		비용집	
	수 행 시 기		수 행 시 기	
	1 차	2 차	1 차	2 차
형 평	19.78(3.43)	22.50(4.24)	19.78(4.79)	23.83(4.80)
균 등	18.72(6.06)	24.72(5.99)	18.50(3.65)	19.78(3.35)

주: 각 조건의 사례수는 $n=9$. 1차 수행은 보상분배 이전에, 2차 수행은 보상분배 이후 수행 한 것임. ()안은 SD.

순 2원상호작용효과: $F=5.38$, $df=1/32$, $p<.05$).

한편, 집단응집 조건에서 분배이전(1차수행)의 분배방식 조건간의 정답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단순 주효과: $F=1.00$, $df=1/64$, ns), 분배후에 균등분배 조건이 형평분배 조건의 정답수 보다 2.22개 많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단순 주효과: $F=1.03$, $df=1/64$, ns).

집단비용집 조건에서는 보상분배 이전보다 형평 분배를 한 후에 4.05개가 증가하였고(단순 주효과: $F=16.40$, $df=1/32$, $p<.01$), 균등분배에서는 1.28개가 증가하여(단순 주효과: $F=1.37$, $df=1/32$, ns), 형평분배에서보다 균등분배에서의 정답 증가량이 작았으나 증가량의 차이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5%의 임계치인 $F=4.15$ 에 다소 미달하였다(단순 2원상호작용효과: $F=3.84$, $df=1/32$, $p<.10$).



〈그림 2〉 집단응집 수준 및 분배방식별 1차와 2차 수행에서의 정답수평균

한편, 집단비용집 조건에서 분배 이전의 1차수행에서 분배방식 조건 간의 정답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단순 주효과 : $F < 1.00$, $df = 1/64$, ns), 보상분배 이후에는 형평분배조건이 균등분배 조건보다 정답수가 평균 4.05개 많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단순 주효과 : $F = 4.64$, $df = 1/64$, $p < .05$).

이상의 분석에서 집단응집 조건에서는 균등분배를 하였을 때보다 형평분배를 하였을 때 정답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본 실험의 예언 1과 일치되는 것으로서, 시도문제수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앞서의 시도문제수의 분석 결과, 집단응집 조건에서 균등분배를 하였을 때보다 형평분배를 하였을 때 2차과제의 시도문제수가 증가하지 않았던 결과는 이 조건의 피험자들이 정답수를 증가시키려 하였기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집단비용집 조건에서 비록 통계적으로 5% 수준에 미달하였지만, 균등분배를 하였을 때가 형평분배를 하였을 때보다 정답수의 증가가 작았다는 결과는, 적어도 앞서 시도문제수의 분석결과에서 이 조건의 시도문제수가 적었던 이유가 정답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행동기가 감소하였기 때문임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상기한 정답수에서의 3원 상호작용을 시도문제수의 분석에서와 같이 각각의 분배원칙에서 집단응집수준에 따른 증가량의 차이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정리하여 보면, 형평분배에서의 정답 증가량은 집단응집 조건에서는 2.72개인데 반하여, 집단비용집 조건에서는 4.05개로 나타나

집단응집 조건에서의 증가량이 작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단순 2원상호작용효과: $F = 0.88$, $df = 1/32$, ns).

한편, 균등분배를 하였을 경우에 정답 증가량이 집단응집 조건에서는 6.00개인데 반하여 집단비용집 조건에서는 1.28개에 불과하여, 형평분배일 때의 추세와는 반대로 비용집 조건에서 정답 증가가 작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단순 2원상호작용효과: $F = 11.14$, $df = 1/32$, $p < .01$).

이상의 분석에서 균등분배를 할 경우 집단응집 조건보다 비용집 조건에서 정답수의 증가량이 작다는 결과는, 앞서의 시도문제수의 분석 결과에서 형평분배를 할 경우 집단비용집 조건보다 응집 조건에서 시도문제수가 작았던 원인이 피험자들이 정답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행동기가 작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형평분배를 할 경우에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집단비용집 조건에서보다 응집 조건에서 정답수의 증가가 작은 추세를 보여, 형평분배의 경우에 적어도 집단응집 조건이 비용집 조건에서 보다 정답수가 증가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이 결과도 앞서 시도문제수의 분석에서 형평분배의 경우 집단응집 조건이 비용집 조건 보다 수행량이 감소하였던 이유가, 피험자들이 정답수를 증가시키려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수행동기가 감소하였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형평분배의 경우에는 집단응집 수준에 따른 정답수의 증가량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도문제수에서도 그것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5% 수준에 미달함으로써, 형평분배의 경우에는 균등분배와는 달리 집단응집 수준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특히 다음과 같은 본 실험조건의 특징을 고려할 때 더욱 부각된다. 본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의 투입이 큰 조건이었기 때문에 균등분배보다는 형평분배 조건의 피험자들이 1차과제에 대한 보상(전표)을 많이 받았다(10장 중 7장). 또한, 이에 더하여, 균등분배 조건에서는 앞으로도 과제수행에 관계없이 보상을 동일하게 줄 것으로 지시하였고, 형평분배 조건에서는 앞으로도 과제수행의 정도에 비례하여 줄 것이라고 지시하였다. 이는 균등분배 조건에서는 2차과제의 수행정도가 보상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는 반면에, 형평분배 조건에서는 자신의 수행정도가 보상획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평분배 조건의 피험자들은 자신이 자신조원보다 잘 하였을 때 보상이 크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과제수행을 잘하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조건이 된다. 반면에, 균등분

배는 이전에 자신이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 형평분배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과제수행이 보상의 수단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서, 강화이론이나 유인이론에서 볼 때 균등분배보다는 형평분배 조건에서 차후 수행의 수행량이증가될 것으로 예언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와는 반대로 집단응집 조건에서 균등분배보다 형평분배 조건의 피험자들이 오히려 차후수행을 감소시켰다는 본 실험의 결과는, 집단응집이 강할 때에는 현존하는 자신과 타인 간의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라도 균등상태로 환원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 조건에 따라서는 불균등이 야기하는 불공정감이 개인에게 강력한 불만요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불형평보다 불균등이 더 큰 심리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총 합 고 찰

이 연구는 분배원칙에 대한 형평이론과 다원칙론의 대립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지각자의 정의판단 기준으로서 형평원칙과 독립적인 균등원칙도 존재하며, 따라서 불형평만이 아니라 불균등도 불공정 분배로 지각될 수 있음을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형평이론과 다원칙론의 대립된 입장을 틀로하여 본 연구 결과들의 의의를 고찰하려 한다.

실험Ⅰ과 실험Ⅱ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분배원칙의 선호조건 가설(가설 1)과 불형평과 불균등의 해소가설(가설 2)이 각각 지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어진 분배가 불형평 할 때만이 아니라 불균등할 때에도 불공정한 것으로 지각될 수 있으며, 불형평 분배일지라도 항상 불공정하게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분배원칙 선호조건에 따라 불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형평원칙 유일론적 입장에서 불형평만을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평이론의 제한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형평이론이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형평이론에서의 투입요인은 지각자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지각된 투입요인”이다. 따라서 형평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본 실험의 집단응집 조건에서는 실로 지각하지 않고 집단응집에 따라 부각된 집단에 대한 멤버십을 투입요인으로 지각할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수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균등분배를 한것이 불형평으로 지각되지 않고, 동일한 멤버십에 입각한 형평분배로서 지각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형평이론으로 본다면 집단응집 조건에서는 균등분배가 형평분배가 되며 작업수행 정도에 비례한 형평분배가 오히려 투입요인으로 조작한 작업수행 정도를, 피험자들이 적절한 투입요인으

히려 불형평으로 지각될 수 있다. 더우기 본 연구에서 불균등의 효과도 균등 회복을 위한 투입과 성과의 조절로서 검증, 지지되었기 때문에 이는 불형평의 해소로서 해소될 수 있으므로 본 실험의 결과가 형평이론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실험의 결과를 상기한 바와 같이 설명하는 것은 개인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요인을 적절한 투입요인으로 지각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는 한 문제가 있다. 형평이론은 이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분배하며, 어떠한 형태의 분배를 정의롭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예언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주어진 조건에서 지각되는 적절한 투입요인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형평이론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적절한 투입요인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어떻게 통합하여 개인의 투입크기로 산출할 것인가의 문제도 계속 남게된다. 따라서 형평이론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본 연구결과를 형평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순환적 설명에 지나지 않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 다원칙론의 입장만을 가지고 본 연구결과를 설명하기에도 미흡하다. 가설 2는 형평원칙이 선호되는 조건에서는 불형평을 해소하고 균등원칙이 선호되는 조건에서는 불균등을 해소하려 한다는 논저에 근거한다. 따라서 가설 2 자체만 보면 분배원칙 선호를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원칙론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언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입장에는 불형평과 불균등을 해소하려는 동기가 개인에게 어떠한 반응, 행동을 초래하는가에 대한 체계적 설명과 예언이 없기 때문에 실험Ⅱ의 결과를 예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형평이론이 다원칙론의 입장을 받아들여 불균등 분배도 불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본 실험의 결과를 예언, 설명할 수 있는 바,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이었다. 요컨대 본 실험의 결과는 분배원칙에 대한 대립적 입장인 형평이론과 다원칙론을 절충함으로써 잘 설명된다.

의 효과에 관한 이론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두 이론이 애당초 대립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렇다고 두 이론을 별개의 현상을 다루는 상호무관한 이론으로 보아서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불공정의 효과를 물음할 때, 본 연구가 보여주듯이 분배원칙 선호조건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평이론과 다원칙론을 대립된 관계로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해하여 이들을 통합함으로써 분배정의와 관련된 심리적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는 정의판단의 기준으로서의 형평원칙과 균등원칙의 선호조건으로 집단응집 수준을 제안하고 이를 확

인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자신-타인” 분배 파라다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Leventhal(1976 a)이 주장하는 것처럼 집단결속(grb-up soidarity)이 강할 때에는 인상관리가 중시되어 투입이 큰 사람은 타인에게 너그럽게 보이기 위해서 균등원칙을 선호하고, 투입이 적은 사람은 자신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형평원칙을 선호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Leventhal(1976 a)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삼았던 shapiro의 연구(1975)에서와는 달리 단순한 차후 상호작용이 아니라 같은 집단멤버십을 갖고 공동운명체로서의 상호작용할 것을 예상하게 하여 집단응집 조건을 조작하였던 바, 투입이 큰 조건과 작은 조건 모두에서 균등원칙이 선호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집단응집이 강할 때에는 인상관리적 관심에 서가 아니라, 개인들이 자신을 집단구성원으로 동일시하여 개인차가 무시되기 때문에 균등원칙이 선호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이 타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와같이 집단응집성과 관련된 대인지각과정이 개재하는 지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유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집단과 관련된 지각과정이 분배원칙의 선호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도 있다. 예를 들면 Wegner(1982)는 개인의 주의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될 때에는 형평원칙이 우세하고, 자기 자신과 공동작업자 모두가 함께 주의의 대상이 되어 집단으로 자각(aware)될 경우에는 균등원칙이 우세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Giuliano 와 Wegner (1981)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의 실험에서 자신 자각(self awareness) 조건은 공동작업자를 볼 수 없는 조건에서 피험자 앞에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만을 볼 수 있게 하여 조작되었고, 집단자각(group awareness) 조건은 피험자 자신과 공동작업자가 함께 자리를 한 조건에서 거울을 두어 피험자에게 자신과 공동 작업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조작되었다. 그 결과, 그들의 가설이 예언한 바 대로 자신자각 조건에서는 형평원칙이 우세하였고 집단자각 조건에서는 균등원칙이 우세하였다. 따라서, 형평원칙은 구성원들 자신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지각되는 조건에서 선호되고, 균등원칙은 자신과 타인이 동일집단의 구성원임이 강조되는 조건에서 선호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배원칙 선호가설이 본 연구에서 전제한 대로 집단과 관련된 대인지각과정이 개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대한 직접적인 추후 연구가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장성수(1985). 비경제적 보상이 불형평 보수분배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社會心理學研究** 2-2, 261 - 287.
- 韓德雄(1983). **組織行動의 動機理論**. 서울 : 法文社.
- Adams, J. S.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New York : Academic Press.
- Deutsch, M. (1975). Equity, equality and need : What determines which value will be used as the basis of distributive justice? *Journal of Social Issues*, 31, 137-149.
- Festinger, L. (1950). Informal social communication. *Psychological Review*, 57, 271-282.
- Giuliano, T., and Wegner, D. M. (1981). Justice and social awareness. Presented at symposium : *Justice as a pervasive theme in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Los Angeles, August.
- Homans, G. C. (1961). *Social behavior :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 Harcourt, Brace & World.
- Lach, G. (1975). *Die Bedeutung der Stellung in der Geschwisterreihe, des sozialen Status und des Geschlechts für das Aufteilen gemeinsam erzielter Gewinne*. Graz : Phil. Diss.
- Lerner, M. J. (1975). The justice motive in social behavior : An introdu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1, 1-19.
- Lerner, M. J. (1977). The justice motive : Some hypotheses as to its origins and forms. *Journal of Personality*, 45, 1-52.
- Leventhal, G. S. (1976a). The distribution of rewards and resources in groups and organizations. In L. Berkowitz & E. Walster(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9). New York : Academic Press.
- Leventhal, G. S. (1976b). Fairness in social relationships. In J. Thibaut, J. T. Spence, & R. C. Carson(Eds.), *Contemporary topics in social psychology*. Morristown : General Learning Press.
- Leventhal, G. S., & Lane, D. W. (1970). Sex, age, and equity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312-316.
- Leventhal, G. S., & Michaels, J. W. (1969). Extending the equity model : Perception of input and allocation of rewards as a function of duration and quantity of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

- Mikula, G., and Schwinger, T. (1978). Intermember relations and reward allocation. In H. Brandstätter, J. H. Davis, & H. Schler(Eds.), *Dynamics of group decisions*. Beverly Hills : Sage.
- Mikula, G., & Uray, H. (1973). Die Vernachlässigung individueller Leistungen bei der Lohnaufteilung in Sozialsituationen. *Zeitschrift für Sozialpsychologie*, 4, 136-144.
- Sampson, E. E. (1975). On justice as equality. *Journal of Social Issues*, 31, 45-64.
- Shapiro, E. G. (1975). The effect of expetations of future interaction in reward allocations in dyads : Equity or equ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873-880.
- Shaw, M. E. (1981). *Group dynamics*. McGraw-Hill Book Company.
- Tajfel, H.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 Academic Press.
- Tajfel, H. (1979). Individuals and groups in social psychology.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 183-190.
- Turner, J. C. (1982). Towards a cognitive redefinition of the social group. In H. Tajfel(Ed.),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d Editions de la maison
- Walster, E., Berscheid, E., & Walster, G. W. (1973). New directions in equity research. *Joru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151-176.
- Walster, E., Walster, G. W., & Berscheid, E. (1978). *Equity : Theory and research*, Boston : Allyn & Bacon.
- Wegner, D. M. (1982). Justice and the awareness of social entities. In J. Greenberg & R. L. Cohen(Eds.), *Equity and justice in social behavior*. New York : Academic Press.

ABSTRACT

The Effect of Group Cohesiveness on Preference among Distribution Principles

Chang, Sung-Soo

Department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contrast two major distribution principles: the equity principle and the equality principle. It was proposed that group cohesiveness is an important condition which determines a person's preference of the distribution principles. It was also proposed that such preference would be effective both in allocation behavior and in reactions to injustice caused by imposing a non-preferred distribution principle.

The following two hypotheses were tested. (1) The equality principle will be preferred when group cohesiveness is high, but the equity principle will be preferred when group cohesiveness is low. (2) People will try to eliminate inequality rather than inequity when group cohesiveness is high, but they will try to eliminate inequity rather than inequality when group cohesiveness is low.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s(1) experiment I was conducted. In this experiment, subjects participated as a four-person unit and performed a simple task as a two-person group. Group cohesiveness was manipulated by assigning subjects to either group competition condition(high group cohesiveness condition) or individual competition condition(low group cohesiveness condition), and input level was manipulated by giving subjects false feedback on their task performance. The design was a group cohesiveness levels(high and low) $\times$ input level (high and low) factorial design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kind of the distribution principle employed when subjects allocated tokens to ingroup members. The results supported the hypothesis(1).

The experiment II was conducted to test the hypothesis(2). In this experiment, subjects performed two tasks and were allocated outcomes for the first

tasks according to either the equity principle or the equality principle, thus creating the state of injustice from the standpoint of one of the distribution principles. The subjects in this experiment were given opportunity to eliminate the state of injustice through adjusting their performance level(input) for the second task.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number of questions attempted in the second task. Th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2)

Thus, all the hypotheses were supported in the experiments, providing strong evidenc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group cohesiveness and the preference of distribution principles. The implications of the present study was viewed in the context of the equity principle theory versus multi-principle theory issue. Also,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the necessity of the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